

공통 고발 처리 정책

Bright Star Schools("Charter School") 위원회는 관련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공통 고발 처리 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Charter School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 준수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규정 준수 및/또는 조사 수행을 담당하는 자는 조사하도록 배정받은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범위

이 고발 처리 절차("UCP")는 다음 유형의 고발에 대해 균일한 고발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1. 연령, 혈통, 피부색,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민족군 식별, 이민 신분, 시민권, 성별 표현, 성적 정체성, 성별, 유전 정보, 국적, 출신 국가, 인종 또는 민족, 종교, 건강 상태, 결혼 여부, 생물학적 성별, 성적 취향의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에 기반하여, 또는 일체의 Charter School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과 한 개인 사이의 연관성에 기반하여 일체의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고발.
2. 다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나 연방법 또는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
 - 임신, 육아 또는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 통합 범주형 지원,
 - 현재 공립학교에 등록된 위탁 보호 학생, 노숙자 학생,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그리고 이주 아동 및 군인 가정 자녀의 학생 교육,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교 안전 계획
3.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래에 정의된 용어에 따른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발.
 - a. "교육 활동"은 교과 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의 필수적인 기본 부분을 구성하는, Charter School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b. "학생 부담 비용"은 *Hartzell v. Connell* (1984) 35 Cal.3d 899에서와 같이, 교육 활동을 가족의 능력이나 요금 납부 의사나 특별 납부 면제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교육법 49011항 및 캘리포니아 헌법 9조 5항을 위반하여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을 의미합니다. 학생 부담 비용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수업이나 활동이 선택적인지 필수인지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나 수업 등록 조건으로, 또는 수업이나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요금.

- ii. 자물쇠, 사물함, 책, 수업 용구, 악기, 유니폼 또는 기타 재료나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납부금.
 - iii.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용품, 장비 또는 유니폼을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구매.
- c. 해당 고발이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법 52075항에 참조로 실린 바와 같이, 교육법 47606.5항 또는 47607.3항의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교육법 52060 - 52077항의 미준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증거로 이끄는 정보일 경우, 학생 부담 비용 고발과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에 대한 고발에 한해 익명으로(신원을 식별하는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 Charter School이 학생 부담 비용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캘리포니아 교육부("CDE")가 항소에서 가치를 발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되는 경우 Charter School에 의한 합리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해 구축된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전액 상환을 보장합니다.
- e.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기금 또는 자산의 자발적 기부 권유, 모금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Charter School 및 기타 단체가 모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상이나 기타 표창을 제공.
4. 해당될 경우, 교육법 47606.5 및 47607.3항에 따라 지역 관리 기금 공식("LCFF") 또는 LCAP를 관장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고발. Charter School이 LCAP에 더하여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을 채택하는 경우, 교육법 64000, 64001, 65000 및 65001항에 따른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고발도 이 항에 해당됩니다.
5. 교육법 49490-49590항에 따라 구축된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관한 미준수 혐의 고발은 7편, 연방 규정 코드("CFR") 210.19(a)(4), 215.1(a), 220.13(c), 225.11(b), 226.6(n), 250.15(d)항 및 5편,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15580-15584항이 관장합니다.
6. 교육법 56000-56865항 및 59000-59300항에 따라 구축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미준수 혐의 고발은 5 CCR 3200-3205항 및 34 CFR 300.151-300.153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릅니다.

Charter School은 모든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고발은 원고의 신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들의 기밀성을(최대한 합리적으로, 또한 법률상 허가된 바에 따라) 보호하고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Charter School은 원고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Charter School은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또는 사례별로 총괄 책임자나 피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조사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발/원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원고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준수 담당자

위원회는 다음 준수 담당자(들)를 고발을 접수 및 조사하고 Charter School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준수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Leeann Yu, Chief Operations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

lyu@brightstarschools.org

Bright Star Schools

물리적 주소: 60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우편 주소: 5101 Santa Monica Blvd Ste 8, PMB 93, Los Angeles, CA 90029

(323) 954-9957 x1006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고발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정된 준수 담당자(들)가 자신이 담당하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수 담당자는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대로 법률 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의 준수 담당자는 Charter School 위원회의 회장이 됩니다.

알림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정책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연례 통지는 Charter School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은 직원, 학생,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 자문위원회, 사립 학교 관계자 및 적절한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Charter School의 UCP에 대한 서면 알림을 매년 제공합니다.

연간 통지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48985항에 따라 필요 시, Charter School에 등록된 학생의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단일 기본 언어를 사용할 경우, 이 연례 통지는 그들의 기본 언어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연례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UCP의 범위, 그리고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발을 관장하는 주 및 연방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고발 유형의 목록.
2. 건강 및 안전법 1596.792(o)항 및 해당하는 5편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Charter School이 면허 면제로 운영하는 일체의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과 Charter School이 운영하는 일체의 캘리포니아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은 22편 면허 요건에 따라 운영 중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진술.
3. Charter School은 연방, 주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주 책임이 있다는 진술.
4. 공립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 학생 부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진술.
5. 준수 담당자의 직위와 현재 해당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의 신원(알고 있는 경우)을 식별하는 진술.
6. UCP 고발이 CDE에 직접 제출되고 CDE가 직접 개입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CDE는 당사자들이 일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거나 CDE가 예외적인 상황을 문서화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고발 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술.
7. UCP 요건의 대상이 아닌 고발을 다루는 데 Charter School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Charter School의 결정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면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CDE에 Charter School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진술.
8. UCP 고발에 대한 Charter School의 결정에 대해 CDE에 항소하는 원고는 원고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거나 CDE가 예외적 상황을 기록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한 CDE가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는 진술.

Charter School이 UCP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CDE가 항소에서 가치를 발견할 경우, Charter School은 해당 시 영향을 받는 학생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기존 법률의 요건에 일치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진술.

9. 해당될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법률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민법 구제책과 교육법 262.3항에 따른 항소에 대해 원고에게 조언하는 진술.
10. Charter School의 UCP 사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진술.

절차

다음 절차는 Charter School이 위의 “범위” 항에 열거된,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고발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준수 담당자는 각 고발 및 후속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최소 달력일 기준 3년 동안 유지합니다.

이름이 거론된 모든 당사자는 고발이 접수될 때, 고발 처리 회의 또는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 그리고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질 때 이 정책에 따라 통지를 받습니다.

1단계: 고발 접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 공공기관 또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이 정책에 관한 미준수 혐의 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고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고발은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개인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일체의 특정 개인 집단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한 개별 학생이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정당하게 승인된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에 대한 조사는 연장 사유를 설명하는 원고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접수 시간이 연장되지 않은 한,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가 발생한 날짜 또는 원고가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혐의 사실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합니다.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한 이러한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달력일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연장 요청을 받는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기타 모든 고발은 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LCAP와 관련된 고발의 경우, 위반 혐의 날짜는 Charter School 위원회가 LCAP를 승인하거나 연례 업데이트가 Charter School에서 채택된 날짜입니다.

고발은 각각에 대한 코드 번호 및 날짜 스탬프와 더불어, 접수된 고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준수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접수된 고발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수기, 타이핑(이메일 내 포함) 또는 전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학생 부담 비용 또는 LCAP 준수에 관한 고발에 한해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고발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Charter School 직원이 원고의 고발 접수를 도울 것입니다.

2단계: 중재

고발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준수 담당자는 원고와 중재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중재에 동의할 경우, 준수 담당자는 이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관련 고발의 중재를 시작하기 전, 준수 담당자는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관련 기밀 정보의 당사자로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가 원고가 만족하는 정도까지 고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준수 담당자는 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재의 활용은 원고가 그러한 시간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Charter School의 일정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단계: 고발 조사

준수 담당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고발을 중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조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고 및/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고발 사항을 구두로 반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 및/또는 원고의 대리인은 고발에서 증거, 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보유해야 합니다.

원고가 고발 혐의와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준수 담당자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원고가 기타 조사 방해에 가담하는 경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고발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Charter School이 준수 담당자에게 고발 혐의와 관련된 기록 및/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기타 조사 방해에 가담하는 경우,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여,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평결이 초래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구제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서면 결정

Charter School은 증거에 기반한 조사 보고서("결정")를 발행할 것입니다. Charter School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의 서면 동의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Charter School의 접수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전송됩니다. Charter School의 결정은 가능할 때마다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영어 및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사실의 발견,
2. Charter School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제공하는 결론.
3. Charter School이 고발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법에 의해 정당하거나 요구되는 경우의 시정 조치.
4. UCP 요건의 대상이 아닌 고발을 다루는 데 Charter School이 UCP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DE에 서면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Charter School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통지.
5. 해당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직원이 고발의 결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결정문에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해당 직원에게 Charter School의 기대 사항이 고지되었다는 내용이 간략히 기재됩니다. 결정문은 관련 법률상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징계 조치의 성격에 대한 일체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DE에 항소

결정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CDE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Charter School에 접수된 서류 사본과 결정문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CDE에 항소 시, 원고는 반드시 항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1. Charter School이 고발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2. 고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Charter School의 결정문에는 법의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부족함,
3. Charter School 결정문의 중요한 사실 발견에는 실질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음,
4. Charter School 결정문의 법적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 및/또는
5. Charter School 결정문에서 미준수를 발견한 경우, 교정 조치는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함입니다.

원고가 결정에 항소했다는 CDE의 통지 시, 총괄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은 통지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CDE에 전달해야 합니다.

1. 원래의 고발장 사본,
2. 결정문 사본.
3. 당사자들이 제출하거나 조사관이 수집한 모든 메모, 질의 및 문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의 사본,
4.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한 보고서.
5. Charter School의 고발 처리 절차 사본.
6. CDE에서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CDE에서 항소가 지역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결정할 경우, CDE는 해결을 위해 신규 고발로서 해당 신규 사안을 Charter School에 다시 회부합니다. CDE가 Charter School에, 결정이 고발에 의해 제기된 UCP 절차 대상인 혐의를 처리하지 못했음을 통지할 경우, Charter School은 UCP 요건에 따라 그러한 혐의(들)을 조사 및 처리하고 CDE와 항소자에게 CDE 통지로부터 달력일 기준 20일 이내에 그러한 혐의(들)를 다루는 수정된 결정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결정에서는 항소인에게 원래 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고발 혐의(들)와 관련하여 수정된 결정에 별도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할 것입니다.

5 CCR 4633(f)(2)항 또는 (3)항에 따라 CDE가 항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 공교육 교육감("SSPI") 또는 SSPI의 피지명인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은 CDE의 항소 결정에서 사실 발견, 법적 결론 또는 시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구체화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SSPI는 이러한 정보가 항소 당시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마땅한 주의하에 당사자에게 알려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 중 당사자가 이전에 CDE에 제출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고 요청에 대한 SSPI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CDE 항소 결정은 법원에서 보류 중이 아닌 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CDE는 원고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 Charter School이 Charter School에 고발이 접수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5 C.C.R. 4650항에 등재된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할 시, Charter School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고발 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민법 구제책

원고는 Charter School의 고발 처리 절차 외에 이용 가능한 민법 구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중재 센터 또는 공익/사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민법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및 접근 금지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하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고발의 경우, 원고는 민법 구제책을 추진하기 전에 CDE에 항소를 접수한 후 달력일 기준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금지 명령 구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Charter School이 원고에게 적절하게, 적시에 고발을 접수할 권리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통 고발 처리 절차 양식

성: _____ 이름/중간 이름: _____

학생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_____ 학년: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1(도로명/아파트): #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집 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직장 전화: _____

위반 주장 대상 학교/사무실: _____

비준수 혐의(들)의 경우, 해당 시 귀하의 고발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 임신, 육아 또는 수유 중인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 통합 범주형 지원
- 위탁 청소년, 노숙 청소년, 전 소년법정학교 학생, 이주 아동 또는 군인 가정 자녀의 교육
- 모든 학생 성공법
- 학교 안전 계획
- 학생 부담 비용
- 지역 관리 기금 공식,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또는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의 미준수
- 아동 영양 프로그램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관련 혐의(들)에 해당되는 경우, 고발 사항에 설명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나이	유전 정보	성별(실제 또는 인식)
혈통	이민 상태/시민권	성적 지향(실제 또는 인식)
피부색	결혼 여부	이러한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그룹과의 연관성에 기반됨
장애(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상태	
민족군 정체성	국적 / 출신국	
성별 / 성별 표현 / 성적 정체성	인종 또는 민족	
	종교	

1. 고발 사항에 대한 사실을 작성해 주십시오. 고발 조사관에게 유용할 수 있는 관련자의 이름, 날짜, 증인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알려 주십시오.

